

2020년도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12.(금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정현,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95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21건(안전번호 제2020-43314호~4424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43314호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43315호~4333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37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9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민원인 신고 내용이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당 정보는 비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 C 위원: 비식별 하는 것에 동의함.
- D 위원: 이견이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인 신고 내용과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

2. 안건상정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한글과컴퓨터', '월트디즈니컴퍼니', '이십세기폭스', '소니픽처스', '유니버설픽처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43314호~44247호로, 39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421건의 게시물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31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 ○○○○○○○○○ ○○○○ ○'을 스트리밍 형태로 전송한 사

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제공되고 있음. 우리말 번역을 누가 했는지, 자막 제작을 누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영상물뿐만 아니라 스틸컷과 간략한 리뷰를 함께 전달하고 있음. 지금 재생 중인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 ★★★ ★★ ★★에서 2019. 10. 5.부터 2020. 3. 7.까지 방영하였음.

안전번호 제2020-43314호의 안전은 1개인데, 실제로 심의하고 있는 게시물 수는 총 23건임. 안전번호 개수와 심의대상 게시물 개수가 일치하지 않음. 이는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호원의 시스템에서 복제·전송자 즉 업로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물명 등이 일치하면 한 개의 안전으로 묶고 있기 때문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43314호의 두 번째 게시물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해보겠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24분 30초 분량의 영상물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보여주면서) 민원인은 침해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캡처 화면을 제출하였음.

- A 위원: 민원인이 왜 신고를 한 것인지? 라이벌 관계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일본 애니메이션 분야를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인들이 존재함.
- A 위원: 보상을 제공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상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모니터링 업체에서 불법복제물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개별 민원인들의 신고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움.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은 최신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는 아직 정식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합법 시장은 현재 시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시장 즉,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을 포함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민원인 신고 내용, 침해증거자료와 함께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4331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동의함. 시정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동의하는 바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331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3315호~4333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총 20건의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어도비사의 'Photoshop',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Office',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함. 해당 안건들의 권리자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별도로 시정권고를 요청한 것은 아님.

(안건표를 제시하면서)해당 안건표에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명, 게시자, 게시물수, 버전, 저작권사, 무료 체험용 제공 여부, 특이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음. 버전을 보면 대부분 2020년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으며, 설령 2020년 버전이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컴퓨터 프로그램임. 무료 체험용 제공 여부를 보면 모두 권리자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권리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복제·전송을 허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등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행위는 저작재산권의 통제범위 밖에 있음. 즉 저작재산권 침해와 라이선스 계약 위반 사이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문제임. 사용행위의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이용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위반이 성립할 뿐 저작재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음. 이용과 사용의 입장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

대법원은 이른바 '오픈캡처' 사건에서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안건표를 제시하면서)특이사항을 보면 심의대상 게시물 중에는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크래킹 프로그램, 라이선스 키 등의 제공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크래킹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이용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복제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남. 또한 크래킹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라이선스 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복제·전송자의 심의대상 게시물 제공 행위가 불법복제물 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 또는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D 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크래킹 프로그램, 라이선스 키 등의 제공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제거, 변경, 우회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원래 크래킹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볼 때 우회 프로그램에 해당함. 그러므로 크래킹 프로그램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크래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우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당함. 하지
만 크래킹 파일을 실행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
는 무력화 행위의 예비행위 내지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음. 그러므
로 법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
의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권고의 대상이라고 본 것임.

- B 위원: 유사한 안건을 과거에 다수 심의하였음. 소프트웨어 권리자
가 적극적으로 침해 단속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보호원이 자체 모
니터링을 통해 조사하여 심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 체험용 버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료 체험용 버전과 정식 버전의 차이를 심의에서 가려낼 수 있는
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크래킹 파일과 라이선스 키를 동시에 제공
했을 때 이것을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정범과
방조범의 관계로 볼 것인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임. 결론
적으로 해당 안건은 프로그램 자체가 정식 버전인지 무료 체험용
버전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크래킹 파일과 라이선스 키를 동시
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 내지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
거나 무력화시키는 정보에 해당되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는 결
론으로 가결해 왔었음.

- D 위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무료 체험용 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항목이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무료 배포는
가능하지만 상업적 배포는 불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음. 그러므로
무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자체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닌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음.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과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임. 물론 저작재산권 침해이면서 동시에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음.

- B 위원: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용자 그룹별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교육 기관용, 기업용 등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료와 사용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과 같음. 실제 의과 대학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병원에서 이용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라이선스 계약 위반의 책임 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지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건이 저작권법상 침해가 되는지 논란이 되었음.

검토보고서에 서술된 오픈캡처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추후에 라이선스 정책의 변경으로 유료로 변경됨. 기존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업데이트를 진행하였고, 기업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은 채 이용함. 이에 오픈캡처는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함.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이용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가 됨. 만약 후자로 본다면 형사책임이 제외됨. 이에 법원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함. 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저작권 침해를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음. 그러므로 크래킹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 무료 체험용 버전을 판매하는 사안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라고 보아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D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무료 체험판의 경우 크래킹 파일이 필요 없음. 지금 심의 안건들은 모두 크래킹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시정권고에 앞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씩 감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료 체험판인지 정식 버전의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43315호~4333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동의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크래킹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 무료 체험용 버전을 판매하는 사안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라고 보아 시정권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C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43315호~43332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333호~44247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트롤: 월드투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553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트롤: 월드투어'를 35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저작물은 2020. 4. 29. 극장과 VOD에서 동시 개봉한 작품으로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000원에 대여, 약 14,900원에 구매 가능함. 현재 오프라인에서 상영 중이며 해당 영화의 배급사는 '유니버설 픽처스'임.

- B 위원: 과거에 플랫폼별로 영화 개봉 시기에 시차를 두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에 영화를 동시 개봉하는 방향 등으로 콘텐츠 비즈니스가 변화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단속 업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 '언더워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580호는 웹하드에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의 영화 '언더워터'를 186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27. 개봉하였으며 현재 상영 중임.

(영화 '콜 오브 와일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623호는 웹하드에서 '콜 오브 와일드' 영화를 330 캐시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영화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의 영화로 2020. 5. 14. 개봉하였음. '네이버 시리즈on'에서 4,950원에 대여, 10,900원에 구매 가능함.

(영화 '그루지 2020'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692호는 웹하드에서 공포 영화인 '그루지 2020' 영화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3. 미국에서 개봉하였음. 국내에서는 극장 개봉 없이 2차 매체로 유통됨. 2004년에 개봉하였던 동명의 일본 영화가 원작임. 미국 저작권사는 '소니 픽처스 릴리징'임.

(음악 '아로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4121호는 배우 '조정석'이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불러 멜론 차트 1위

까지한 음악에 대한 사안임.

(영화 '패왕별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575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패왕별희'를 20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영화는 1993. 12. 24. 개봉한 영화로 리마스터링되어 2020. 5. 4. 재개봉하였음.

(영화 '탑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786호 영화 '탑건'은 1987. 12. 19. 개봉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임. 웹하드에서 20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PC로 확인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333호~44247호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불법복제물로 판단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43333호~4424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동의하는 바임.
- D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3333호~44247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3314호~4424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19.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재화

위원 위정현

위원 홍지만